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 1463 호 2024. 7. 18.(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52호[달천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5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5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26호[공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29호[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39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40호[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0

| | |
|--------|--|
| 안 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52호

달천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의 달천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가. 명 칭 : 달천농공단지
-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
- 다. 면 적 : 259,635.0m²

※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달천농공단지 기존공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경계조정에 따른 분할 및 합병(구역계 및 면적 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공업입지공급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 1997년 ~ 1999년 (준공)
- 나.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가. 유치업종 : 기계 및 조립, 금속 제조업 등(무공해업종)
- 나. 업종별 배치계획 : 관리기본계획상의 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계 | 259,635.0 | - | 259,635.0 | 100.0 | |
| 자연녹지지역 | 7,043.9 | - | 7,043.9 | 2.7 | |
| 일반공업지역 | 252,591.1 | - | 252,591.1 | 97.3 | |

나. 세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구분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계 | 259,635.0 | - | 259,63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94,108.9 | - | 194,108.9 | 74.8 | |
| 지원시설용지 | 7,798.3 | - | 7,798.3 | 3.0 | |
| 공동이용시설 | 5,867.7 | - | 5,867.7 | 2.3 | |
| 청년창업시설 | 1,930.6 | - | 1,930.6 | 0.7 | |
| 공공시설용지 | 55,332.3 | - | 55,332.3 | 21.3 | |
| 도 로 | 34,238.7 | - | 34,238.7 | 13.1 | |
| 주 차 장 | 3,565.0 | - | 3,565.0 | 1.4 | |
| 녹 지 | 17,528.6 | - | 17,528.6 | 6.8 | 공원포함 |
| 보전용지(묘지) | 2,395.5 | - | 2,395.5 | 0.9 | |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총 괄

(면적 : m²)

| 구 분 | 도 로 | 주 차 장 | 공 원 · 녹 지 |
|-----|----------|---------|-----------|
| 기 정 | 32,435.4 | 3,565.0 | 17,528.6 |

2) 도 로(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

| 구분 | 합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m ²)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 ²) |
| 합계 | 14 | 2,859 | 32,435.4 | 9 | 1,674 | 16,763.4 | 2 | 403 | 5,380.0 | 3 | 782 | 10,292.0 |
| 종로 | 3 | 1,008 | 14,420.0 | - | - | - | 1 | 308 | 4,620.0 | 2 | 700 | 9,800.0 |
| 소로 | 11 | 1,851 | 18,015.4 | 9 | 1,674 | 16,763.4 | 1 | 95 | 760.0 | 1 | 82 | 492.0 |

주)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803.3m² 제외면적임

3) 공 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44 | 소공원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2번지 | 1,156.2 | - | 1,156.2 | 10.4.8 울(북)고 28호 | |

4) 녹 지(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 명 | 시설 의 세 분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418 | 녹지 | 완충 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 | 7,369.2 | - | 7,369.2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19 | 녹지 | 완충 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 | 973.9 | - | 973.9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20 | 녹지 | 완충 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3번지 일원 | 1,248.3 | - | 1,248.3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21 | 녹지 | 완충 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1번지 일원 | 6,781.0 | - | 6,781.0 | 10.4.8 울(북)고 28호 | |

5) 주 차 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 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203 | 주차장 | 북구 달천동 207-5번지 일원 | 1,653.0 | - | 1,653.0 | | |
| 기정 | 204 | 주차장 | 북구 달천동 212-8번지 일원 | 1,009.1 | - | 1,009.1 | | |
| 기정 | 205 | 주차장 | 북구 달천동 214-2번지 일원 | 902.9 | - | 902.9 | | |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조서(변경) : 생략

가. 북구 달천동 213-5번지(면적:24.8㎡) 분할 및 합병(구역계 및 면적 변경없음)

- 1) 달천동 212-11번지에 213-5번지 10㎡ 합병
- 2) 달천동 212-12번지에 213-5번지 14.8㎡ 합병

나. 북구 달천동 213-4번지(면적:61.2㎡) 합필(구역계 및 면적 변경없음)

- 1) 달천동 212-11번지에 213-4번지 61.2㎡ 합병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1) 총괄조서(울산광역시)(변경없음) : 생략
-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계 | 259,635.0 | - | 259,635.0 | 100.0 | |
| 자 연 녹 지 지 역 | 7,043.9 | - | 7,043.9 | 2.7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52,591.1 | - | 252,591.1 | 97.3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1) 도로(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조서

| 구분 | 합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4 | 2,859 | 32,435.4 | - | - | - | - | - | - | - | - | - |
| 종로 | 3 | 1,008 | 14,420.0 | - | - | - | 1 | 308 | 4,620.0 | 2 | 700 | 9,800.0 |
| 소로 | 11 | 1,851 | 18,015.4 | 9 | 1,674 | 16,763.4 | 1 | 95 | 760.0 | 1 | 82 | 492.0 |

주)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803.3㎡ 제외면적임

나) 도로 세부조서

| 구 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51 | 15 | 집산도로 | 308 | 중1-336 | 중3-174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중로 | 3 | 174 | 14 | 집산도로 | 195 | 중2-151 | 소1-47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중로 | 3 | 173 | 14 | 집산도로 | 505 | 중3-174 | 소1-51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46 | 10 | 국지도로 | 101 | 소1-47 | 북구 달천동 218-4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47 | 10 | 국지도로 | 370 | 중3-173 | 북구 달천동 208-1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48 | 10 | 국지도로 | 78 | 중3-174 | 북구 달천동 208-6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49 | 10 | 국지도로 | 95 | 소1-47 | 북구 달천동 203-8 | 일반도로 | | '00.3.10 0 울고33호 | 04.12.6 울북고49호 |
| 기정 | 소로 | 1 | 50 | 10 | 국지도로 | 367 | 중2-151 | 중3-173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51 | 10 | 국지도로 | 236 | 중3-173 | 소2-319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52 | 10 | 국지도로 | 218 | 중3-173 | 소2-319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53 | 10 | 국지도로 | 128 | 중3-173 | 북구 달천동 221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1 | 72 | 10 | 국지도로 | 81 | 소1-46 | 북구 달천동 201-1 | 일반도로 | | | |
| 변경 | 소로 | 2 | 319 | 8 | 국지도로 | 95 | 소1-51 | 소1-52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82 | 소1-50 | 북구 달천동 211-5 | 일반도로 | | | '00.3.10 울고33호 |

2)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44 | - | 소공원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2번지 | 1,156.2 | - | 1,156.2 | 10.4.8 울(북)고 28호 | |

3) 녹지(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418 | 녹지 | 완충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 | 7,369.2 | - | 7,369.2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19 | 녹지 | 완충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 | 973.9 | - | 973.9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20 | 녹지 | 완충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3번지 일원 | 1,248.3 | - | 1,248.3 | 10.4.8 울(북)고 28호 | |
| 기정 | 421 | 녹지 | 완충녹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1번지 일원 | 6,781.0 | - | 6,781.0 | 10.4.8 울(북)고 28호 | |

4) 주차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203 | 주차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7-5번지 | 1,653.0 | - | 1,653.0 | 10.4.8 울(북) 고 28호 | |
| 기정 | 204 | 주차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8번지 | 1,009.1 | - | 1,009.1 | 10.4.8 울(북) 고 28호 | |
| 기정 | 205 | 주차장 |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2번지 | 902.9 | - | 902.9 | 10.4.8 울(북) 고 28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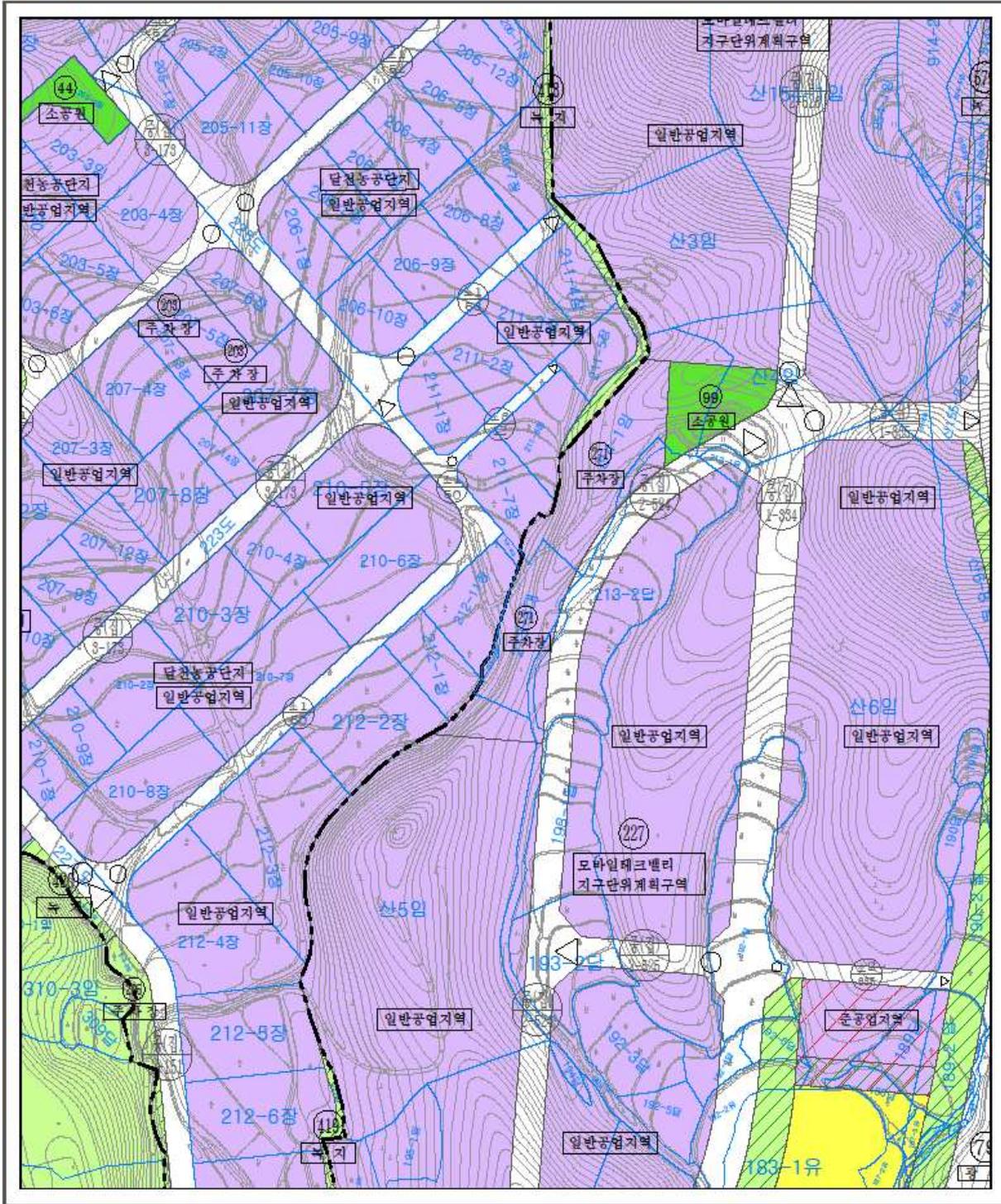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달천농공단지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

1:1,000 지형도

도형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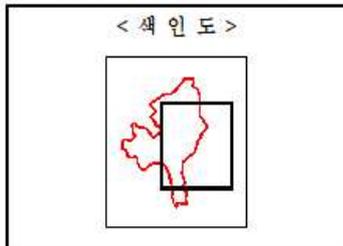
축척 - 1:1,000



본 지형도면고시도는 원문 및 신청서류에 한하여 효용성
변경이 없는 부본을 기정하도 함임

| 번 | | 색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노란색 |
| ■ | 일반공업지역 | 보라색 |
| ■ | 주요녹지지역 | 초록색 |

| 지정권자 | 울진광역시 북구청장 | 지정일자 | 2024. 7. 12. | | | | |
|-------------|--------------|--------|--------------|--------|--------|--------|--------|
| 고시번호 | 2024. 7. 12. | 고시번호 | 제2024 - 162호 | | | | |
| 국립연구소 및 발전소 | | | | | | | |
| 구분 | 목적종 | 일반권장 | 1차 용인권 | 2차 용인권 | 결정권자 | 1차 용인권 | 2차 용인권 |
| 소속 | (주)울진테크노이비 | 경제인사회 | 경제인사회 | 경제인사회 | 경제인사회 | 경제인사회 | 경제인사회 |
| 리위 | 대표이사 | - | - | - | - | - | - |
| 의정 | -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
| 성명 | 김장규 | 우소영 | 최유미 | 우소영 | 최유미 | 우소영 | 최유미 |
| 확인인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4-20

나. 허가 연월일: 2024. 7. 12.

2. 점용·사용의 목적: 굴착(지반조사)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963-7번지, 명촌동 25-4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효문동 963-7번지(일시: 30m²), 명촌동 25-4번지(일시: 30m²)

나. 기 간: (일시) 허가일 ~ 2024.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지암컨설팅트 안용운

나.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동 1016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울산광역시 복구 차일2길 45 외 4건

| 연 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 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 지 참조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
| 1 | 창평동 503-6 | 차일2길 45 | 20240718 | 기존마을인 차일마을 지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 20040809 |
| 2 | 산하동 1023-24 | 산음4길 32 | 20240718 | 기존마을인 산음마을 지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 20140421 |
| 3 4 | 매곡동 795-3 매곡동 920-4 | 매곡로 180 매곡로 179 | 20240718 | 매곡동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법정동인 매곡동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 20090710 |
| 5 | 호계동 996-2 | 당수골14길 3 | 20240718 |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 20170504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02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 | |
|----------|--|----------|---|
| 성명 |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 | |
|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 | |
| 점용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계동 1041-7번지 ○ 매곡동 930-5번지 ○ 매곡동 918-4번지 | 노선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2-332 ○ 소1-76 ○ 소2-353 |
| 점용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매설공사 | 점용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8m ○ A(일시) = 14.40m² ○ A(계속) = 0.48m² |
| 점용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029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사업

나. 명칭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사업

2. 사업시행자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16

○ 성명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동만

3. 사업장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2번지 일원

4. 사업규모

가. 도로

| 등급 | 등 급 | | 연 장(m) | 비 고 |
|----|-----|-----|--------|----------|
| | 류별 | 번호 | | |
| 소로 | 1 | 98 | 10 | 342 |
| 중로 | 3 | 481 | 12(10) | 342(342) |
| 소로 | 1 | 102 | 10(10) | 420(420) |
| 소로 | 1 | 103 | 10(10) | 87(87) |
| 소로 | 3 | 273 | 6(6) | 87(87) |
| 소로 | 3 | 220 | 6(6) | 154(154) |

※ ()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연장 및 폭원임.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비고 |
|----|------------|--------|------------------|----------------------|----|
| 기정 | 108 | 소공원 | 북구 염포동 42번지 일원 | 2,289.0 | |
| 기정 | 7 | 사회복지시설 | 북구 염포동 44-4번지 일원 | 969.0 | |
| 기정 | 40 | 공공공지 | 북구 염포동 20번지 일원 | 2,460.0 | |

5. 사업기간 : 2018. 6. 28. ~ 2025. 2. 28.

6. 열람기간 : 2024. 7. 18. ~ 2024. 8. 2.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기간 중에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붙임 1]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 구분 | 소재지 북구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
| 1 | 양정동 | 556-31 (556-25) | 임 | 488.0 | 488.0 | 김○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000동 000호(서현동, 한신아파트) | 김○근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000동 000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 근저당권 | |
| | | | | | | | | 박○영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00번길 58,000호 (옥동, 보배빌라트) | 근저당권 | |
| | | | | | | | | 황○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4000동 2000호 (하동, 광교마을40단지) | 근저당권 | |
| | | | | | | | | 이○철 |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5, 1000동 1000호(배곧동, 호반베르디움 센트럴하이) | 근저당권 | |
| | | | | | | | | 문○란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32, 100동 1300호(용당동, 신대연코오롱하늘채 아파트) | 근저당권 | |
| | | | | | | | | 이○용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135, 100동 1000호(상동, 정화우방팰레트) | 근저당권 | |
| 2 | 염포동 | 44-5 (44-2) | 천 | 52.0 | 52.0 | 박○선 | 울산시 서동 503 | - | - | - | - |
| 3 | 염포동 | 44-7 (44-5) | 천 | 1.0 | 1.0 | 박○선 | 울산시 서동 503 | - | - | - | - |

[붙임 2]

수용·사용할 물건의 조서(1)

| 구분 | 소재지 북구 | 지번 (원래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
| 1 | 양정동 | 556-31 (556-25) | 컨테이너 | 3M x 4M x 2.5M | - | - | - | - |

의 견 서

| | | |
|--|--------------------------------|---------------------------------------|
| 1.제 목 |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사업』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의 견 | | |
| 4.기 타 | | |
|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 |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039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 사항과 개별 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34조제2항)
(현행) 100~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62조)
(현행) 100~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 1년(안 제61조제3항)
-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안 제31조제6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 8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80
-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6조)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 차별적 용어 정비 : 장애자용 → 장애인(안 별표 제3호)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81조(변상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2,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

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 <p>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p> |
|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p> <p>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p> <p>4. (생 략)</p> |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 ----- ----- -----</p> <p>4. (현행과 같음)</p> |
| <p><신 설></p> |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p> |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3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6개월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12개월 6회 이내 분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 구분 | 실 명 | 설계 기준 | | | 비 고 |
|------------------|---------|-------|-------|---------|------------------|
| | | 실수 | 단위(㎡) | 면적(㎡) | |
| 진 료 활 동 | 접수 / 수납 | 1 | 13.86 | 13.86 | |
| | 의무기록창고 | 1 | 10.89 | 10.89 | |
| | 대기공간 | 1 | 48.00 | 48.00 | 4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
| | 약국조제실 | 1 | 13.86 | 13.86 | |
| | 약국창고 | 1 | 13.86 | 13.86 | |
| | 일반진찰실 | 3 | 17.82 | 53.46 | |
| | 처치실 | 1 | 17.80 | 17.80 | |
| | 치과진찰실 | 1 | 27.54 | 27.54 | |
| | 치과장비실 | 1 | 2.70 | 2.70 | |
| | 치과용 암실 | 1 | 2.16 | 2.16 | |
| | 소독실 | 1 | 8.91 | 8.91 | |
| | 예방접종실 | 1 | 17.82 | 17.82 | |
| | 소아놀이실 | 1 | 9.90 | 9.90 | |
| | 수유실 | 1 | 7.92 | 7.92 | |
| | 화장실 | 2 | 15.84 | 31.68 | 남 녀 구분 |
| 장애이용 화장실 | 1 | 4.86 | 4.86 | 남 녀 미구분 | |

| 구분 | 실 명 | 설계 기준 | | | 비 고 |
|------------------|---------|-------|-------|---------|------------------|
| | | 실수 | 단위(㎡) | 면적(㎡) | |
| 진 료 활 동 | 접수 / 수납 | 1 | 13.86 | 13.86 | |
| | 의무기록창고 | 1 | 10.89 | 10.89 | |
| | 대기공간 | 1 | 48.00 | 48.00 | 4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
| | 약국조제실 | 1 | 13.86 | 13.86 | |
| | 약국창고 | 1 | 13.86 | 13.86 | |
| | 일반진찰실 | 3 | 17.82 | 53.46 | |
| | 처치실 | 1 | 17.80 | 17.80 | |
| | 치과진찰실 | 1 | 27.54 | 27.54 | |
| | 치과장비실 | 1 | 2.70 | 2.70 | |
| | 치과용 암실 | 1 | 2.16 | 2.16 | |
| | 소독실 | 1 | 8.91 | 8.91 | |
| | 예방접종실 | 1 | 17.82 | 17.82 | |
| | 소아놀이실 | 1 | 9.90 | 9.90 | |
| | 수유실 | 1 | 7.92 | 7.92 | |
| | 화장실 | 2 | 15.84 | 31.68 | 남 녀 구분 |
| 장애인 화장실 | 1 | 4.86 | 4.86 | 남 녀 미구분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040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4. 7. 18. ~ 8. 7.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 설치예정장소 | 수 량 | 비고 |
|---|--------|----|
|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관내</p> (호계동 873-12, 매곡동 938-4, 신천동 481-10, 당사동 748, 영포동 161-1, 양정동 854, 산하동 923-2, 영포동 141-2) | 이동식 8대 | |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